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0일, 김원이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 의원)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개정안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의의가 큰 날 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거나 특정 지역이나 개별 이익단체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 개정안은 화장품의 날 지정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화장품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러한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념일 법정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개정안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려고 하는 9월 7일은 「화장품법」이 제정된 날로써, 2024년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식약처와 관련 단체에서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